

## 2차

### 주거용 유닛에 대한 코로나 10 비상사태 임대료 보조금 프로그램

비상사태 임대료 보조금 프로그램(ERAP-C19)은 유자격 저소득층 가정을 대신하여 2개월 동안, 한달에 750 달러까지 (최고 1,500 달러까지 보조)집주인에게 주거용 임대료를 제공해줍니다.

**누가 자격이 됩니까?**주거지를 유지하고/혹은 체납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보조가 필요한 주거용 세입자

자격이 되려면, 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반드시 글렌데일 주민이어야 합니다.
2. 합법적 임대유닛(혹은 방을 서브리스)을 반드시 임대해야 하고 현재 임대계약서나 서브리스 계약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과금 고지서와 우편 서비스 등의 추가 정보로 유닛에 거주하는 임대인 가구주로써 가구주를 확립해야 합니다.
3. 저소득층 가구(80%와 지역 중간소득 이하)로 자격이 맞아야 합니다. HUD의 규정에 따라 총 가구 소득이 유닛의 한 가구수마다 아래 최대값을 넘으면 안됩니다. 신청인은 소득자격을 증명하는 출처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대 수입한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지역중간수입 80%	\$ 63,100	\$72,100	\$81,100	\$ 90,100	\$97,350	\$ 104,550	\$ 111,750	\$118,950

4.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다음 중 한 가지가 피해에 해당됩니다.
  - 코로나 19로 인해 유급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이윤으로 인한 수입의 손실 (예: 해고, 근무시간 손실, 수입감소)
  - 코로나 19로 아프거나 코로나 19에 걸린 가구/가족을 간병하는 이유로 인한 수입의 손실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생긴 별도 본인부담비용 (예: 휴교로 인한 육아비용, 의료비용, 또는 정부가 발령한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 등)
  - 비상사태동안 집에 있었고, 자가 격리하고, 혹은 다른 사람과 모임을 피하라는 정부 보건명령의 의무사항으로 인한 수입의 손실
  - 코로나 19 비상사태와 관련된 다른 요인으로 인한 수입의 손실
5. 같은 목적으로 지방, 주, 연방정부기관에서 비상사태 보조금을 이미 받았으면 안됩니다 (IRS에서 발급한 연방정부 경기부양 체크는 이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6. 임대유닛의 건물주/집주인과 가족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7. 시정부가 후원하는 저비용주택 프로젝트에 현재 거주하거나, 다른 종류의 주택보조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섹션 8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8. 연방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신청인이 자격이 되려면 합법적 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 신청하는 방법

2차 신청서는 2021년 1월 11일부터 (12시 정오, 서부시간) 2021년 1월 22일 (12시 정오, 서부시간)까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게 됩니다.

ERAP-C19 프로그램 내용과 신청서 링크는 아래에서 찾아보십시오.

<https://www.glendaleca.gov/government/departments/community-development/housing/erap>

가정마다 신청서 1개만 제출해도 됩니다. 중복 신청서는 신청인이 실격됩니다.

1차 보조금을 받은 분은 2차 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 차 보조금에 신청했으나 선택받지 못한 분은 2 차 보조금에 재신청하고 새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차 신청서를 제출한 분은 1 차에 만든 대기자명단 체크 어카운트를 사용하여 2 차에 신청하십시오.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은 [ERAPCOVID19@Glendaleca.gov](mailto:ERAPCOVID19@Glendaleca.gov) 혹은 (818) 548-2069 으로 전화하십시오.